

국외여행자 및 축산관계자 소독 확인증

성 명		국 적		
주민등록번호		여권번호		
직 업				
주 소				
연락처	(전화번호)	(휴대폰)		
확인내용	1. 구제역 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,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 방문여부	유	무	
	2. 우제류동물 사육장소 방문여부	유	무	
	3. 가금류 사육장소 방문여부	유	무	
소독조치				

「가축전염병 예방법」 제5조제5항 및 제6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4제4항에 따라 국외여행자 및 축산관계자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
농림축산검역본부장 (인)

〈 축산관계자 준수사항 〉

- 구제역·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·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가를 여행할 경우에는 축산농가, 가축시장 등의 방문을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국외여행에서 귀국한 후에는 5일 동안 가축 사육시설 출입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국외여행 중에 입었던 옷 등은 바로 세탁하여 주시고, 샤워 등 개인위생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여행지에서 판매하는 육류, 햄, 소시지 등 축산물을 가져오지 마시고, 부득이 가져온 경우에는 도착 공항 및 항구에 주재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(지역본부)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축산농가(동거가족 포함), 축산농가 고용자(동거가족 포함), 수의사, 가축 인공수정사, 가축방역사, 동물약품·사료판매자, 가축분뇨 수집·운반자, 가축시장 종사자, 원유 수집·운반자는 입국할 때 입국자 동물검역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, 검역관의 소독조치를 받아야 합니다.
- * 축산관계자가 입국 시 공항이나 항구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(지역본부) 검역관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답변하거나 검역관의 검사·소독 등의 조치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57조제1호의2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.

농림축산검역본부장

[㉠]